

「2014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현지 진출 프로그램 중국 해외창업팀 모집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지보육(창업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2014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현지 진출 프로그램 중국 해외창업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글로벌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팀)을 발굴하여 창업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창업·진출 촉진

□ 지원규모

- (중국) 10개 팀 내외

< 국가별 신청분야 및 지원규모 >

국가	신청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현지보육)
중국	제조 등 전 업종	10개 팀 내외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현지보육) 사무공간 제공, 분야별 현지 전문가 멘토링, 전문가 특강 등 현지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세부내용
전문가특강	▪ 현지 시장분석, 성공전략 등
사무공간 제공	▪ 현지창업 준비에 필요한 공간
멘토링	▪ 분야별 전문 멘토링 실시
네트워킹 등	▪ 현지 엔젤투자자 등과 네트워킹, 데모데이 제공
현지 체재비 지원	▪ 창업팀 항공료 100%, 숙박비 50% 지급

* 해외창업팀은 현지보육 기간 중 숙박비 1인 기준 81만원(3개월) 부담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①예비창업자 또는 ②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신청 가능하며, ③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2인 이내 팀으로 신청가능 하며, 팀원은 변경 불가

①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및 법인기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② 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2009년 1월 1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③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개인, 기업은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청 및 타 중앙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 진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개인, 기업

* 단, 공고일 현재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붙임 1 참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4년 7월 18일(금) ~ 9월 11일(목), 12: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을 통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신규)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온라인 신청절차

☞ 1단계 : 회원가입

-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에 회원가입(신규)

☞ 2단계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 공고문(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한글파일)를 다운로드 후 작성

☞ 3단계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작성 완료 후, 창업넷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작성파일 업로드
- * 창업넷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창업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새롭게 열리는 창의 우측상단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작성 파일 : (기본)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추가)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접수 완료 확인

4.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우수 창업자 선발을 위해 단계별 평가 진행

- 서류평가 → 멘토링평가 → 발표평가 → 운영기관 면접 4단계 평가 방식으로 진행

⇒ 단, 신청인원에 따라 평가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1) 서류평가 : 현지창업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위주로 선발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멘토링캠프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항목(안) >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현지 사업 모델	사업개념	사업 아이디어, 사업 성공가능성 등
	사업성 분석	사업화 계획, 현지화 전략 등
	시장분석	목표시장 분석, 경쟁제품 분석 등
	재무계획	미래 매출액, 펀딩계획 등
	현지 시장 경쟁력	제품 완성도, 차별성 등 현지 경쟁력

(2) 멘토링평가(50%) : 멘토단이 참가팀의 “창업의지, 전문성, 팀원 역량” 등에 대해 관찰 평가를 시행

- 멘토단의 멘토링 내용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하고, 이 내용을 근거하여 발표평가를 시행

(3) 발표평가(50%) : 멘토링 내용이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에 근거 하여 기술성과 해외 현지 창업가능성 등 발표평가 시행

- 발표평가는 중국어로 발표 진행

☞ 멘토링평가(50%) 점수와 발표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운영 기관 면접평가에 1.5배수 내외 창업팀 추천

< 멘토링 평가 및 발표평가 항목(안)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멘토링평가 (50%)	창업의지	교육 참여의 적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문제 인지 및 해결 능력, 해당 업종의 전문성 등
	참가팀 역량	팀원 인성, 친화력, 리더십, 소통능력, 성실성 등
발표평가 (50%)	기술성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 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대처방안, 기술적 차별성,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
	사업성	국내외시장 규모, 현지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 매출 가능성 등

(4) (운영기관 면접)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현지 시장 적합성 평가를 위한 운영기관 최종면접 실시

(5) (최종선정) 운영기관 면접평가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해외 창업팀을 최종 선정

5.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해외 현지 진출전 선정이 취소되며, 현지진출 후 발견 시 선정취소와 더불어 기 지원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진출국가 비자 발급이 불가할 경우
 -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 현지 진출 후 1개월 경과시점에서 현지시장 적합성 및 현지창업 활동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시 지원 사업을 조기 종료함

< 현지진출 주요 프로세스 >



- 해외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해외진출 참가자에게 있음
 - 해외 현지법규를 준수할 것
 -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 질병 등에 대비 현지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주의를 다할 것
 - 해외 보육장소가 속한 도시를 벗어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할 것
- 선정된 창업자는 숙박비 50%를 창업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 취소 조치 됨
 - * 숙박비는 1인 기준 중국 진출자는 81만원(3개월)이며, 베트남은 80만원(4개월)
-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발표평가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었으나, 프로그램 外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제공할 본 사업 운영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7.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042-480-4331, 3~4
-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42-480-4373

【붙임 1】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사업_해외현지 진출프로그램」
지원 제외 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 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